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Q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나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이란?

■ "전동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 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 (throttle)방식, PAS와 스로틀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자전거로 구분되며, "가속기 레버를 조작하여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라고 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0 제3부 전기자전거, 3.1. 참조).

•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보조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PAS 방식의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반면,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동기의 힘만으로 주행할 수 있어 전기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 전기 구동 이동 수단은 외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구동 방식과 법적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제20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필요한 면허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 그 외 자동차면허는 18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

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인도(보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구분	내용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및 제2조제11호).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Q 학교나 학원에 갈 때 전동킥보드를 자주 타는데, 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또한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에는 잠깐이라도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보도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승차용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및 별표 6 제10호).

초과탑승의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약물 등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을 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및 제93조제1항제1호).

Q 출근길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뒤 길가에 세워두곤 하는데,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차해도 괜찮을까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공유 킥보드 거치대나 주차 허용 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 소화용수설비
-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정차·주차 금지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 등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 정차·주차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

Q 전동킥보드를 타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어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꼭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A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 의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경찰에 신고 의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법 제 처
www.moleg.go.kr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키워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면허,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주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승차정원, 음주측정, 인도주행,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구호의무, 신고의무,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도주